시니어데이케어주은 세종센터
방문요양기관 기본현황

Ⅰ. 기본개요

기관명	시니어데이케어주은 세종센터(33611000089)
급여종류	주간보호 / 방문요양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9, 7,8층(703,704,804,805호)
전화번호	044-417-6120 (FAX) 070-4032-080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thedream001

Ⅱ. 상세내역

1. 주간보호 인력현황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영양사	보조원 운전사
1	3		1	11	1	4	1	1

1. 방문요양 인력현황

직원				수급자		
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계	등급자	등급외자
19	1	1	17	20	20	0

2. 시설현황

주간보호

생활실/프로그램실	사무실	창고	휴게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	○		○	○	○	○	

방문요양

사무실	상담실
○	○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붙임
4. 사진 --- 붙임(주야간보호와 공동 사용)
5. 교통편 --- 새롬동/나성동 정류소에서 하차 5분 거리(1000,B0,B1,B2,B3)
6. 주차시설 --- 지하 3층 80여대 주차 가능, 건물앞 지상 공용 주차장
7. 보험가입여부 --- 가입/메리츠화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6.5.2.00:00 ~ 27.5.2.00:00

붙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시니어데이케어주은 세종센터

「붙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전까지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3,500원 3,500원

1)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명시하고 다음과 같다

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방문요양)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8조

5)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본인 부담금	일 반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부담
	기초 수급자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 경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100분의 60의 범위	· 「의료급여법」 제3조1항2호~9호에 규정한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기타	전액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비용 (주야간 보호)	식사	1식/3,500원	1식 점심 3,500원
	간식	1일/2,000	일일 1,000원 * 2회
	이·미용	실비	서비스 제공시
	기타	실비	병, 의원 이용 등 기타 서비스 제공시

6) 이용료 납부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 센터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할 경우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 이용자의 이용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사)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지

가)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

다) 계약의 해지방법

1. 이용자는 제10조 라항 3호 가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를 진행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